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신기술(특허공법)명 :섬유강화패널,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방법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특허 제10-0717623호

○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천장관 내진보강공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리코이엔씨(주) 대표 손승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천장관 내진보강공사" 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0%)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

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삭 제>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 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5년 06월 일

“발주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리코이엔씨(주) 대표 손승열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10-0717623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10-2005-0119492 호

출원일 Filing Date 2005년 12월 08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 2007년 05월 07일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섬유강화패널,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방법

특허권자 Patentee

리코이엔씨(주)(18451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98 (구서동)

발명자 Inventor

박상태(5409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67번길 7, 105동 1902호 (좌동, 대창아파트)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 Act,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원본대조필

2015년 06월 08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최 동 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신기술(특허공법)명 :왕복식 슬릿강재 댐퍼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특허 제10-0908863호
○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천장관 내진보강공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디피알파트너(주) 대표 손승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천장관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0%)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삭 제>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 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5년 06월 일

“발주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디피알파트너(주) 대표 손승열(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10-0908863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2008-0104336 호

출 원 일 (FILING DATE:YY/MM/DD) 2008년 10월 23일

등 록 일 (REGISTRATION DATE:YY/MM/DD) 2009년 07월 15일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왕복식 슬릿강재 댐퍼

특허권자 (PATENTEE)

디피알파트너 주식회사(180111-0******)

부산광역시 동래구 화현길 16 (안락동)

발명자 (INVENTOR)

등록사항란에 기재

원본대조필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2년 06월 21일

특 허 청 장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연차등록료 납부일은 설정등록일 이후 4년차부터 매년 07월 15일까지이며 등록원부로 권리관계를 확인바랍니다.